

2019년 제2회 부산광역시 의무직 5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재공고

201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의무직5급(일반의무)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21일
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

직 렬	직급	선발예정	응시자격	근무예정지
의무직 (일반의무)	5급	2명	의사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자 ※ 실무경력은 의료기관 진료 및 보건행정분야 근무 포함	부산광역시, 사상구

※ 근무예정지별 구분모집 : 부산시(1명), 사상구(1명)

2. 시험방법

-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(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)
 -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 - ※ 서류전형 기준 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
-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(제1차 시험 합격자만 제2차 시험 응시가능)
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 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.논리성, 예의.품행.성실성, 창의력.의지력.발전가능성
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근무 예정지	임용 분야	직렬·직급	주요업무
건강정책과	의사	의무5급 (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감염병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업무 총괄 · 기초지자체 대상 감염병 관리지도 및 교육 · 국내·외 감염병 동향분석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
사상구	의사	의무5급 (구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건소 방문 일반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·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협조사항 ·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관련사업 등

4. 응시자격

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

□ 응시결격사유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같은법 제66조(정년) 해당자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◇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◇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◇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자격요건
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함

거주지 제한 : 없음

5. 시험일정 및 서류제출

시험일정

응시원서접수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 (시험페이지)
11. 4.(월) ~ 11. 6.(수) (http://local.gosi.go.kr)	서류전형	11. 14.(목)	10층 회의실	11. 19.(화)
	면접시험	11. 25.(월)	24층 회의실	11. 29.(금)

※ 시험공고 2019.10.21.(월) ▷ 부산광역시홈페이지, 서류제출 11.4.(월)~11.8.(금) 18:00까지

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9. 11. 4.(월)~11. 6.(수) ▷ 취소기간 : 11. 4.(월)~11. 8.(금)
- 접수방법 :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
 -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사이트의 처리단계별 안내에 따라 접수
 - 접수 및 문의 :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(☎1522-0660)
- 접수(취소)시간 : 접수(취소)기간 중 09:00~21:00, 단 마감일 18:00
 - ※ 응시수수료(10,000원) 외 소정의 처리비용 소요 (휴대폰결제·카드결제, 계좌이체비용)

- 응시원서 사진 ▷ 서류접수 시 제출
 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으로 규격은 3.5cm × 4.5cm
-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 -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
 - '취소기간'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
 - 응시료 출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

□ 서류제출

- 접수기간 : 2019. 11. 4.(월)~11. 8.(금) 18:00까지
 - ※ 접수기간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간주
- 접수처 :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(051-888-1975)
 - ※ 주소 ▷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우편번호 47545)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 제출 원칙이나 방문제출도 가능
 - ※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- 제출서류
 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 - ② 이력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 - 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 - ③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 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 - ⑤ 의사면허증 사본
 - ⑥ 대학교(학사)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·성적증명서 각 1부
 - ※ 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졸업증명서는 학위증서로 대체 가능
 -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-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
 -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(면접)일 기준
 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 -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원본) 1부
 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
 - ⑨ 외국어능력 관련 증명서, 각종 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명자료, 상훈 등 증빙자료 등 각 1부
 -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 - ⑪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

6.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 (☎051-888-197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